|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
| --- |
| 아 이 돌 봄 과 |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발의연월일 | 2026. . . |
| --- | --- |
| 발 의 자 | 김정도 의원 |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김정도 의원 발의)

|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  .

발 의 자 : 김정도 의원(1인)

찬 성 자 : 김영태·김재우·김지식·박윤경 유승헌·이탕모·장진호 의원(7인)

## 1. 제안이유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비밀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별지 서식에 관한 사항(안 별지 제1호～제3호)

## 3. 조례안: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영유아보육법」 제3조

2) 「아동복지법」 제2조, 제3조, 제4조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3조, 제7조

나. 부서검토: 아이돌봄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등록 아동”이란 출생확인이 되지 않고 구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확인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미시가 미등록 아동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아동의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기록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지원대상 확인서”란 미등록 아동의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 확인증을 발급받은 아동의 사실확인을 위해 구미시장에게 발급 요청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증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출생 등록 절차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주체 및 자격)** ①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가 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밖에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방법 등)** ① 미등록 아동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2. 아동 및 보호자의 현 주소 또는 거소지
3. 부모 양쪽 또는 한쪽의 성명·출생연월일·국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의거 부 또는 모가 아닌 자의 요청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현장방문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증 등 발급)** ①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발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실조사 후 신청사항과 다를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미등록 아동의 지원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시장에게 확인증의 사실확인 및 지원대상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확인증 및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아동의 출생 등록과 그

아동의 국적 취득 및 체류자격의 부여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

**제7조(비밀보호 의무)** ①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에게 정기적인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미등록 아동이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한 복지, 교육, 보건 사업을 안내하고 관계기관을 연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의 지원과 확인증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미등록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발급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확인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기존의 확인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로 인해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의료·보육·교육 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활성화와 인식개선

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등록 아동 발굴 및 보호에 기여한 주민, 관계기관 등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증 (재)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Re)issuance of Certificate Unregistered at birth in Gumi City

앞쪽(Front)

| 접수번호 (No.) | 접수일 (Date) | 카드번호 (Card No.) | 처리기한 (Processing deadline)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Within 14 days of receipt) |
|---|---|---|---|---|
| | | | | |

| | | | | | | |
|---|---|---|---|---|---|---|
| 아 동<br>(여권용사진)<br>(Picture)<br>3.5㎝×4.5㎝ | 성 명<br>(Name) | | 생년월일<br>(Date of birth) | | 성별<br>(Gender) | |
| | 주 소<br>(Address) | | | | | |
| 신청인<br>(신분증 사본 별첨)<br>(Applicant) | 성 명<br>(Name) | | 생년월일<br>(Date of birth) | | 아동과의 관계<br>(Relationship) | |
| | 주 소<br>(Address) | | | 연락처<br>(Phone number) | | |
| 부<br>(Father) | 성 명<br>(Name) | | 생년월일<br>(Date of birth) | | 국적<br>(Nationality) | |
| | 주 소<br>(Address) | | | 연락처<br>(Phone number) | | |
| 모<br>(Mother) | 성 명<br>(Name) | | 생년월일<br>(Date of birth) | | 국적<br>(Nationality) | |
| | 주 소<br>(Address) | | | 연락처<br>(Phone number) | | |
|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br>(Person directly involved in the birth) | 성 명<br>(Name) | | 연락처<br>(Phone number) | | 비 고<br>(Note) | |

*부, 모,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음.
(*Leave blank if father, mother, or birth attendant is unknown.)

| 발급구분 (Classification) | 신규(New)[ ]<br>*재발급(Reissuance)[ ] | *재발급 사유 (Reissuance reason) | 갱신(Renewal)[ ]<br>분실(Loss) [ ]<br>주소변경(Address change) [ ]<br>기타(Other) [ ] |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as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Gumi City Ordinance on the Identification and Support of Children Unregistered at Birth".)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년 월 일 (YY/MM/DD)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구미시장** 귀하 To The Mayor of Gumi City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Consent Form for the Collection,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확인증 발급 대상자 실명 확인 및 아동확인증 발급 등 행정처리, 지원가능한 복지사업의 안내 및 관계기관 연계 등
(Purpose of collect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 Real name verification, issuance of child certificates, Information on available welfare programs and coordination with related agencies, etc)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생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등
(Personal information to be collected: Name, date of birth, address, phone number, Family relationship registration information for birth verification, social security benefit history,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 수집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의거 다른 업무를 위해 유출하거나 활용할 수 없음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shall not be disclosed or used for any other purpo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59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Retention and use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5 years)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Consent to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고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I fully understand the matters stated above and hereby agree to the collection and use of my personal information as described in this application. However, if you do not consent, you must personally submit the documents required to verify your eligibility; please note that this may result in a delay in processing.)

□ 동의함(Y) □ 동의하지 않음(N)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Consent to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안내 및 연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 consent to the provision of my personal information to the institutions listed below. However, if you do not consent, the provision of service information and related referrals may be restricted.)

- 제공받는 자: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서비스 관련 관계기관
(Recipients: Service Providers for support for Unregistered at Birth Children in Gumi City)
- 제공 목적: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서비스 안내 및 연계
(Purpose of provision: Provision of information on and linkage to support services for children unregistered at birth.)
-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지원·연계에 필요한 기타 정보
(Items provided: Name, date of birth, address, contact information, and other information necessary for support and service linkage.)
-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Retention and use period of personal information: 5 years)

□ 동의함(Y) □ 동의하지 않음(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or Seal)

〔별지 제2호서식〕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증

NO.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증**
Gumi City Child ID Card (Unregistered at Birth)

| 사진 (Picture) | 성명/성별: (Name/Gender)<br>생년월일: (Date of birth)<br>유효기간: (Date of expiration) |
|---|---|

발급일자(Date) . . .

**구 미 시 장**
Mayor of Gumi City

직인

(후면)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증**
Gumi City Child ID Card (Unregistered at Birth)

위 확인증은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발급된 증서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으며, 구미시 내에서만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음.

(This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the "Gumi City Ordinance on the Identification and Support of Children Unregistered at Birth." It does not constitute an official proof of status equivalent to documents such as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or the Alien Registration Card. Its validity is confined to the jurisdiction of Gumi City, and it is non-transferable to any other person.)

○ 규격 및 색상

- 가로 8.5cm×세로 5.5cm
- 색상: 백색 플라스틱 또는 종이카드

〔별지 제3호서식〕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대상 확인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Support
for Unregistered at birth Children in Gumi City

제 호(발급번호)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유효기간(Date of Expiration)

용도(Purpose)
제출처(Submission Destination)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The above information is hereby certified as true and correct.)

발급일자(Date) 년 월 일

구 미 시 장
Mayor of Gumi City 직인

1. 위 확인서는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발급된 증서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공적 증명력을 부여하지 않음.
(1. This certificate is issued pursuant to the “Gumi City Ordinance on the Identification and Support of Children Unregistered at Birth.” and does not confer official evidentiary effect equivalent to documents such as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or the Alien Registration Card.)

2. 이 확인서는 그 용도 및 제출처에 한해서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2.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for that purpose and for submission, and may 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생 략)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 11.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생 략)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

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 ④ (생 략)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 ① ~ ② (생 략)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1.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

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아이돌봄과

| 조 례 명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

##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 제3조, 제4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7조(출생등록 및 국적을 가질 권리)

## □ 주요 사항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비밀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 검토 결과

○ 본 조례안은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조기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 권리 보호 강화

○ 소요예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해당사항 없음

# 구미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8조에 따른 복지·교육·보건 사업 안내 및 관계기관 연계 등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 가능하며,
예산 소요는 예상되나 현 단계에서 재정의 구체적인 추계는 어려움

## 4. 작성자

○ 아이돌봄과 아동친화팀 황성혜(☎054-480-6562)